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시·도와 협의를 통해 ‘통합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시·도별 구매단가 편차 발생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최상의 장비가 적기에 도입·보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감사 지적·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주관으로 하는 종합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방청이 주관으로 하는 종합 계약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3항 신설)

- 1) 소방장비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방청이 주관이 되어 종합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법령 상 종합계약의 범위(“공사 등”)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매효율성이 높은 소방장비 통합구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상 종합계약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생략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전(사전검토결과 ‘비대상’판단)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4. 1. 28. ~ 4.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추후 별도 협의

대통령령 제 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선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중앙단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선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중앙단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장비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7695